

<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I >

(1) 계산구조

종합소득 산출세액
 (-) 세액감면 · 세액공제
 결 정 세 액
 (+) 가 산 세
 총 결 정 세 액
 (-) 기 납 부 세 액
 차 가 감 납 부 세 액

(2) 세액감면 · 세액공제

<1> 적용순서

세액감면 → 이월공제 되지 않는 세액공제 →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*

* 이 경우 당기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있을 때에는 이월된 공제액을 먼저 공제함.

<2> 감면세액

산출세액 × 감면대상 소득금액 × 감면을
 종합소득금액

(3) 세액공제

구 분	세액공제	법인세법 유무	이월공제기간
소득세법상 세액공제	① 자녀세액공제	×	이월공제 ×
	② 연금계좌세액공제	×	
	③ 특별세액공제	×	
	④ 배당세액공제	×	
	⑤ 외국납부세액공제	○	5년
	⑥ 재해손실세액공제	○	이월공제 ×
	⑦ 기장세액공제	×	
	⑧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 세액공제	×	
	⑨ 근로소득 세액공제	×	
⑩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	×	이월공제 ×	
① 정치자금세액공제	×		
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	×		
③ 월세액세액공제	×		
④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×		
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×		5년
⑥ 전자신고세액공제 등	○		

1. 자녀세액공제 : (1) + (2)

(1) 기본공제 :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**기본공제 대상자**에 해당하는 자녀(입양자, 위탁 아동 포함)에 대해서는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

자녀수	세액공제액
1명인 경우	연 15만원
2명인 경우	연 30만원
3명 이상인 경우	연 30만원 + (자녀수-2명) × 연 30만원

(2) 추가공제

- ①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: 1명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공제
- 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: 1명당 연 30만원 공제

2. 연금계좌세액공제

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* 이 있는 경우 다음 금액을 공제함

구분	내용
세액공제액	세액공제액 : $\min(①, ②) \times 12\%$ [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)거주자는 15%] ① $\min(\text{연금저축계좌납입액, 연 400만원}) + \text{퇴직연금계좌납입액}$ ② 연 700만원

*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

- ① 다음 사유로 원천 징수되지 않는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
 - 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
 - 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
-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

3. 특별세액공제

구분	표준세액공제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, 항목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	연 13만원
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(성실사업자 제외)	연 7만원

* 계산문제에 적용

구분	세액공제액
근로소득자	$\cdot \max(①, ②)$ ① 특별소득공제 × 세율 + 항목별 세액공제*1 + 월세액세액공제 ② 표준세액공제(연 13만원)

위 외의자 (성실사업자제외)	기부금세액공제* ² + 표준세액공제(연 7만원)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¹ 항목별 세액공제

보험료세액공제* + 의료비 세액공제* + 교육비 세액공제* + 기부금 세액공제

* 위 ‘*’의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·이혼·별거·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·부양가족·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함

*²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. 단,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같이 있는 자, 연말정산 사업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

(1) 보험료세액공제

1) 공제대상 보험료

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음)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장성 보험 · 공제의 보험료 등을 공제대상으로 함

2) 보험료세액공제 : ① + ②

① min(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, 연 100만원) × 15%

② min(일반 보장성보험료, 연 100만원) × 12%

(2) 의료비세액공제

1) 공제대상 의료비 : 나이·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(p 277참조)

2) 의료비 세액공제액

· 공제액 : (① + ②*) × 15%
① 본인 ·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·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· 난임시술비
② ①외의 자 의료비 - 총급여액 × 3% (한도 : 700만원)

* 위 ‘②’의 금액이 부수(△)가 나오면 그 금액(절대값)을 ‘①’에서 뺌

(3) 교육비 세액공제(p280 참조)

교육비 세액공제 = 일반교육비세액공제 + 직업능력개발훈련비세액공제 + 장애인특수교육비 세액공제
--

1) 일반교육비 세액공제

기본공제대상자(나이 제한×, 소득금액 제한 ○)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·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

· 공제액 : $\min(①, ②) \times 15\%$
 ① 공제대상 의료비 - 수령시 소득세·증여세가 부과되는 장학금·학자금
 ② 1명당 연 한도 : ㉠ 본인 : 없음
 ㉡ 가족 :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, 초·중·고생 : 300만원
 · 대학생 : 900만원

2) 직업능력개발훈련비세액공제

· 세액공제액 :
 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-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수강지원금) $\times 15\%$

3) 장애인특수교육비세액공제

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(나이 제한×, 소득금액 제한×)을 위하여 특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재활교육비

· 세액공제액 :
 (재활교육비 -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) $\times 15\%$

(4) 기부금 세액공제

1) 기부금의 범위(p282~283)

- ① 거주자(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,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등의 연말정산대상사업자는 포함)가 지급한 기부금
- ②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함

2) 공제대상 기부금의 계산

· 공제대상 기부금 : 법정기부금 + 우리사주조합기부금 · 지정기부금 한도 내 금액 + 필요경비에 산입한 법정 · 우리사주조합 · 지정기부금

◇ 기부금 한도액

기부금 종류		한도액
법정기부금		전액
지정기부금	일반지정기부금 + 종교단체	소득금액* $\times 10\%$ + $\min(\text{소득금액} \times 20\%, \text{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})$
	일반지정기부금	소득금액 $\times 30\%$

* 소득금액 = 종합소득금액(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제외)-법정기부금-우리사주조합기부금

3) 기부금세액공제액 계산

· 세액공제액 : $\min(\text{①}, \text{②})$

① 2,000만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 \times 15% + 2,000만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 \times 30%

② 한도 : 종합소득 산출세액 -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산출세액